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별위원회 설치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9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7조제2항)	2
2. 특별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2항)	5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7. 8.
- (3) 회 부 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의 목적 및 사회적 대화 기반 원칙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7조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2.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에 ①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②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③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④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⑥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⑦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총 8가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부분 산업전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국가재원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재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본계획에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여러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유사 입법례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특별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사회적 대화 기반 추진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임.

특별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7조의 기본계획을 제3조제3항의 사회적 대화 기반 추진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1호의 위원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 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⑥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전국적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⑦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이 임명한다.
- ⑧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 및 노동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항과 제6항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⑩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조제3항은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전환에 따른 지원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산업전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각종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고 있음.¹⁾

-
-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²⁾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³⁾

즉,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중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의 구성비율 및 해당 위원의 추천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법 구조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적은 비중으로

2)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회의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성되거나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추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산업전환에 관한 지원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하여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용정책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0월에 제정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 제정 당시 국회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전문위원회⁴⁾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한바, 동 부대의견의 취지가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보다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부대의견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동 전문위원회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심의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이 때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정부는 동 전문위원회 신설을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 후 6개월 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4년 4월 법 시행에 맞추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하여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 시행령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인바, 향후 동 전문위원회의 구성 추이를 살펴 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⁵⁾

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 8. (생략)

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위원회를 중복하여 설립하기 보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에 따라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를 실시할 예정으로,⁶⁾ 별도의 대화체를 중복 신설하는 방안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6)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논의 의제로 ‘산업전환’을 채택하였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2차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24.6.12.)